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2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에 대한 절차, 이행기간, 시·도지사의 명령서 교부 의무,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와 관련 서식을 규정하며,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정비 명령 시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대상의 범위와 절차,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관리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검사 명령 통지방법 확대 (안 제26조)

- 1) 수시검사 명령 시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교부해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

- 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더라도 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검사대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검사 최고제도 폐지 및 정기검사 명령 도입 (안 제30조)

-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소유자에게 최고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명령을 도입
- 2)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정기검사명령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명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3)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검사신청 등 절차를 규정하며,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함.
- 4)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명령할 때,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등의 명령이행기간 연장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2 신설)

-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며,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명령이행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토록 함.

3) 검사대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명령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대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토록 하여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라. 건설기계 사용·운행중지명령 대상 기준 및 절차 마련 (안 제31조의3 신설)

1)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주요구조를 임의 변경·개조하여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가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처분사실을 기재하고 경찰청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마련함.

3)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즉시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4) 검사대행자가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해 임시로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설기계 검사명령서 개선 (안 별지 제20호의3서식)

- 1) 건설기계 검사명령서에 정기검사 명령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바. 건설기계 사용·운행중지명령서 신설(안 별지 제20호의5서식 신설)

- 1) 시·도지사가 건설기계에 대해 사용·운행중지를 명령할 경우 그 사실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명령서를 신설

사. 건설기계 임시운행확인서 신설 (안 별지 제20호의6서식 신설)

- 1)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를 검사 또는 정비를 위해 임시로 운행할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임시운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자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신설

아. 검사연기·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 개선 (안 별지 제21호서식)

- 1)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명령이행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 본문 중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을 “31일전까지(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검사기간
2. 정기검사 연기신청이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제24조제1항 본문 중 “1월”을 “31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를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명령이행기간”이라 한다)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 소유자”로, “교부”를 “서면으로 통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제출”을 “수시검사 명령의 명령이행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명령이행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만료일로부터 1일) 전까지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하면서 건설기계소유자”를 “통지하면서 건설기계 소유자”로, “법 제13조제9항”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시검사 명령을 공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검사대행자는 시·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0조의 제목 “(정기검사의 최고)”를 “(정기검사 명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명령이행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 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정기검사 명령의 명령이

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명령이행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만료일로부터 1일) 전까지 제출(타워크레인의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정기검사의 명령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을 공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검사대행자는 시·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1개월 이내의 기간을”을 “명령이행기간을 31일 이

내로”로, “건설기계의”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명령을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계의”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개월 이내의 기간을”을 “명령이행기간을 31일 이내로”로, “건설기계의”를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3조제9항”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와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정비명령서를 시·도지사에게 정비명령의 명령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명령이행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만료일로부터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비명령을 공고하는 경우 그 사

실을 통보받은 검사대행자는 시·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제31조의4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1조의2) 제1항 중 “법 제13조제9항”을 “법 제13조제10항”으로,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 제20호의7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의4(중전의 제31조의2)제2항 중 “정기검사의 최고”를 “정기검사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9항”을 “법 제13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기검사의 최고”를 “정기검사 명령”으로 하고,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명령이행기간의 연장) ① 건설기계 소유자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령이행기간 안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명령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31일 이내로 하며, 그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26조제2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이행기간 내 검사를 하지 못할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 경우 명령이행기간의 연장과 함께 건설기계 소유자가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운행중지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에서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운행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 사용·운행중지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차대일련번호)가 상이하여 등록원부와 동일한 건설기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정기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정비명령 후 다시 신청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임의 변경 또는 임의 개조한 경우
5.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경우
6. 법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7. 법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 장치, 부품 및 안전장치 등의 설치·작동상태가 불량하거나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가. 조종사의 의도하지 않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레버 또는 비상정지장치의 작동불능
 - 나. 와이어로프가 꼬임(격임) 상태이거나, 소선수 절단기준(10%) 또는 공칭경 마모기준(7%)을 초과한 경우
 - 다. 과부하방지장치 또는 권과방지장치의 작동상태 불량

- 라. 와이어로프 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작동상태 불량
 - 마. 안전한 전도지선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대(아웃리거)의 균열 및
설치·작동상태 불량
 - 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40% 이하인 경우
 - 사.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터널용고소작업차(영 별표1 제26호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터널용고소작업
차”를 말한다) 붐의 균열
 - 아. 기중기의 붐 또는 타워크레인의 러핑지브(luffing jib)의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기복제한장치의 작동상태 불량
 - 자.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또는 언로더 밸브의 설치·작동상태 불량
 - 차. 타워크레인 마스트, 메인지브, 카운터지브 또는 선회장치의 균열
및 설치상태 불량
 - 카. 타워크레인 횡행레일에 설치된 트롤리의 이동범위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리미트스위치)의 설치·작동상태 불량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나 성능불량 등으
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운행중지 처분사실을 건설기계 등록원
부에 기재

2.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건설기계 등록번호, 사용·운행중지 사유 및 건설기계 제원 등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③ 건설기계 소유자가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용·운행중지 명령과 함께 받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행한 경우 사용·운행중지 명령은 즉시 해제되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운행중지 명령 해제사실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운행중지 명령 해제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운행중지 명령 해제사실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사용·운행중지명령서와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발급하는 임시운행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별지 제20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별지 제20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아목 중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을 “아니하고 1년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9호	취소
--	-----------	----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및 별지 제20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중전의 별지 제20호의5서식) 제1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호 중 “정기검사의 최고”를 “정기검사 명령”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2호”를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100만원”을 “300만원 이하”로,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을 “시행규칙 제31조의4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20호의5서식 및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검사대행자”를 “검사대행자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시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후 31일까지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종전의 제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정비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령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계의 사용·운행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호		건설기계 ☐ 정기검사 ☐ 수시검사 명령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차대번호			규격
명령사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u>정기검사 또는</u> 아래 수시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것	
수시검사 항목 (수시검사만 작성)			
1. 「건설기계관리법」 ☐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검사 ☐ 수시검사를 명령하니 기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습니다. 3. 부득이하게 명령을 지정기간 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명령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 등록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제 호		건설기계 사용·운행중지명령서	
건 설 기 계 등 록 번 호			
명 령 사 유			
사 용 · 운 행 중 지 기 간	정기검사·수시검사·정비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		
위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운행 중지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주 : 이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위한 임시 운행 외에는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건설기계 임시운행확인서		
건 설 기 계	등 록 번 호	
	차 대 번 호	
임 시 운 행	목 적	
	기 간	. . . ~ . . .
위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검사 또는 정비를 위해 임시 운행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대행자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u>검 사 연 기</u>				신청서		처리기간
☐ <u>명 령 이 행 기 간 연 장</u>						5일
신 청 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건 설 기 계 명			등 록 번 호			
규 격 및 형 식			차대일련번호			
☐ <u>검 사유 효 기 간</u> ☐ <u>명 령 이 행 기 간</u>		. . . ~ . . .				
<u>신 청 사 유</u>						
「 건 설 기 계 관 리 법 시 행 규 칙 」 ☐ <u>제24조</u> 에 따 라 신 청 합 니 다 . ☐ <u>제31조의2</u>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대행자 시 ·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 <u>신청</u>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 ⑦ (생략) ⑧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u>1월전까지</u>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u>31일전까지(유효기간 만료일까지</u>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 ----- ---. 1. <u>정기검사기간</u> 2. <u>정기검사 연기신청이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u> 3. <u>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u>
제24조(검사의 연기) ①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u>1월</u>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제24조(검사의 연기) ① ----- ----- ----- ----- <u>31일</u> ----- ----- ----- -----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6조(수시검사)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 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시검사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

[illegible]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시검사) ① -----
----- 명령
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명령이행기간”이라 한다)을 31
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 소
유자----- 서면으로 통지
-----.

----- 다만, 건
설기계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특별자치
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_____

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수시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서를 교부하면서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 수시검사
명령의 명령이행기간 만료일로
부터 15일(명령이행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만료일로부터 1일)
전까지 제출---.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통지하면
서 건설기계 소유자-----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
사가 수시검사 명령을 공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검사
대행자는 시·도지사의 공고 내
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30조(정기검사의 최고)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최고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0조(정기검사 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명령이행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 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정기검사 명령의 명령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명령이행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만료일로부터 1일)

<신 설>

<신 설>

전까지 제출(타워크레인의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정기검사의 명령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

<신 설>

제31조(정비명령등) ① 시·도지사
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
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
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
비명령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
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
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야 한다. <단서 신설>

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
가 정기검사 명령을 공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검사
대행자는 시·도지사의 공고 내
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1조(정비명령등) ① -----

--- 명령이행기간을 31일 이내

로 -- 건설기계 -----

-----.

-----.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거소

②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7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를 알 수 없는 등 명령을 통지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
·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
치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해야 한다.

② -----

----- 건설기계 -

----- 명령이행기간을 31일
이내로 -- 건설기계 -----
-----.

③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와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정비명령서를 시·도지사에게 정비명령의 명령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명령이행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 만료일로부터 1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해체,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 등으로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비명령의 지정기간 안에 시·도지사에게 정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정비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정비기간 연장의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비명령의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삭 제>

⑤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비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신 설>

⑤ -----

-----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
--.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비명령을 공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검사대행자는 시·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1조의2(명령이행기간의 연장)

① 건설기계 소유자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령이행기간 안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에 연장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명령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31일 이내로 하며, 그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26조제2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이행기간 내 검사를 하지 못할 경우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 경우 명령이행기간의 연장과 함께 건설기계 소유자가 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운행중지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에서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운행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 사용·운행중지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차대일련번호)가 상이하여 등록원부와 동일한 건설기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검
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정기
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정비명령 후
다시 신청한 검사에서 불합격
한 경우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
기계의 주요구조나 원동기, 동
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임의 변경 또는 임의
개조한 경우

5.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제
4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금
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운
행한 경우

6. 법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
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
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7. 법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
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
용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 장치,

부품 및 안전장치 등의 설치

· 작동상태가 불량하거나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가. 조종사의 의도하지 않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레버 또는 비상정지장치의 작동불능

나. 와이어로프가 꼬임(꺾임) 상태이거나, 소선수 절단 기준(10%) 또는 공칭경 모 기준(7%)을 초과한 경우

다. 과부하방지장치 또는 권과방지장치의 작동상태 불량

라. 와이어로프 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작동상태 불량

마. 안전한 전도지선을 확보하기 위한 지지대(아웃리거)의 균열 및 설치·작동상태 불량

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40% 이하인 경우

사.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터널용고소작업차(영 별표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터널용고소작업차”를 말한다) 붐의 균열

아. 기중기의 붐 또는 타워크레인의 러핑지브(luffing jib)의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기복제한장치의 작동상태 불량

자.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또는 언로더 밸브의 설치·작동상태 불량

차. 타워크레인 마스트, 메인지브, 카운터지브 또는 선회장치의 균열 및 설치상태 불량

카. 타워크레인 횡행레일에 설치된 트롤리의 이동범위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리미트스위치)의 설치·작동상태 불량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나 성능불량 등으로 건설기계 안전

사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
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
· 운행중지 처분사실을 건설
기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
게 제공

3. 건설기계 등록번호, 사용·운
행중지 사유 및 건설기계 제
원 등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

③ 건설기계 소유자가 법 제13
조제9항에 따라 사용·운행중
지 명령과 함께 받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한 경우 사용·운행
중지 명령은 즉시 해제되며,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이행해야 한다.

	1. <u>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u> <u>· 운행중지 명령 해제사실을</u> <u>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u> 2. <u>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u> <u>· 운행중지 명령 해제사실을</u> <u>경찰청장에게 제공</u> 3. <u>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u> <u>· 운행중지 명령 해제사실을</u> <u>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u> <u>공고</u> ④ <u>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기계</u> <u>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u> <u>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u> <u>행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임시로</u> <u>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u> <u>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사용·운</u> <u>행중지명령서와 별지 제20호의</u> <u>6서식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발</u> <u>급하는 임시운행확인서를 휴대</u> <u>해야 한다.</u>
<u>제31조의2(건설기계 등록번호표</u> <u>의 영치 등) ①</u> 시·도지사는 <u>법 제13조제9항</u> 전단에 따라 건 <u>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u> <u>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u> <u>의 성명·주소, 건설기계의 종</u>	<u>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u> <u>의 영치 등) ①</u> ----- <u>법 제13조제10항</u> ----- ----- ----- -----

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
검사의 최고 또는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

----- 별지 제20호의7서식 -----

----- . 다만, 해당 건설
기계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
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
을 갈음할 수 있다.

② _____

----- 정기검사 명령-----

③ 법 제13조제10항 -----

1. ----- 정기
검사 명령 -----

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고자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이동 하는 경우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 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 사의 신청시에 당해 건설기계정 비업자가 발행한 <u>별지 제20호의</u> <u>6서식</u> 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 확인서를 시·도지사 또는 검사 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u>별지 제20호의8</u> <u>서식</u> ----- ----- -----.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 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그 결과를 <u>별지 제20호의7서</u> <u>식</u> 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 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 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③ ----- ----- ----- <u>별지 제20호의9서</u> <u>식</u> ----- ---. ----- ----- ----- -----

소유자, 관할 시·도지사, 총괄 기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④·⑤ (생략)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u>국토해양부장관</u>이 정하 여 고시한다.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국토교통부장관</u>----- -----.
--	--